

16.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(안)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제1998-202호 1998. 12. 11

제 안 이 유

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내항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하여도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현재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을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도록 함.
- 나.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반영화제작업·광고영화제작업 등을 세법 적용상 제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 산업이 제조업 수준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- 다.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외의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지출액의 범위를 1회 5만원 이상으로 함.
- 라.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자의 퇴적소득공제율 75퍼센트가 적용하는 퇴직수당의 범위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18개월분 평균임금 이내의 금액으로 함.

- 마.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5로 정함.
- 바. 무기장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총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(대리·중개업의 경우 1천 2백만원) 미만인 사업자로 함.
- 사.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상장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%이상을 소유한 대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가 3년간 1%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정함.
- 아. 코스닥주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여 대기업주식의 코스닥 등록시 구주매출과 장외취득·장내양도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되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5%이상 소유 대주주가 3년간 1%이상 양도시에는 과세함.
- 자.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대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·소매업, '광업, 축산업 등의 경우 3억원 미만, 제조업, 음식·숙박업, 건설업 등의 경우 1억 5천만원 미만, 보건·의료업,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7천 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함.
- 차. 복식부기의무자의 계산서·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지출증빙수취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재화·용역의 건당 거래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, 읍·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·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함.
- 카.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취득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바 그 주택 취득 차입금의 범위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포함함
- 타.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에게 무상주를 지급한 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 먼저 감자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변칙적인 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.
- 파.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자를 소매업, 음식·숙박업 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로 함.